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738

발의연월일 : 2020. 8. 6.

발 의 자 : 이수진(비)・윤재갑・양경숙
강민정・박성준・류호정
이상직・황운하・송옥주
신정훈・윤미향・김승원
정성호・박영순・송갑석
맹성규・배진교・김경만
의원(18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포장재를 사용하는 제품 등의 제조자 등은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지켜야 하고, 환경부장관은 제조자 등에게 포장방법과 포장재의 재질을 포장의 겉면에 표시하도록 권장하여야 함.

그런데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포장기준 준수 뿐 아니라 소비자에게 포장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여 제조자 등이 자발적으로 포장폐기물을 줄일 수 있도록 포장재질과 포장방법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지켜야 하는 제품의 제조자 등은 포장재질과 포장방법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포장폐기

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4항 등).

법률 제 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환경부장관은 제조자등에게”를 “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 제조자등은”으로, “포장방법과 포장재의 재질을 포장의 겉면에 표시하도록 권장하여야”를 “포장재질과 포장방법을 표시하여야”로 한다.

제41조제2항제2호의2 및 제2호의3을 각각 제2호의3 및 제2호의4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포장재질과 포장방법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장방법 등의 표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① ~ ③ (생 략) ④ 환경부장관은 제조자등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장방법과 포장재의 재질을 포장의 겉면에 표시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제9조(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 제조자등은----------포장재질과 포장방법을 표시하여야-----.
제41조(과태료)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2. (생 략) <신 설>	제41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1.·2. (현행과 같음) 2의2.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포장재질과 포장방법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
2의2.·2의3. (생 략)	2의3.·2의4. (현행 제2호의2 및 제2호의3과 같음)
3. ~ 16. (생 략) ③·④ (생 략)	3. ~ 16.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